

인적자원개발센터 규정

제 정 : 2012. 1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인적자원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,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진로 및 취업지도 계획 수립 및 운영
2.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추천
3. 취업관련 교육 및 상담
4. 취업홍보에 관한 업무 지원
5. 취업 교과목 및 인턴십 과정 운영
6. 취업통계조사에 관한 업무지원
7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3조 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하부조직)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실 및 학생상담실을 둔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 (전문위원) 센터와 관련된 취업교육 및 지도, 연구,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 (기타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